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요한¹ · 정보선² · 이상엽^{3*}

¹법무법인 태한 대표변호사 · ²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³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n Construction Project Litigation - Focused on the Union Establishment of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Kim, Yohan¹, Jung, Boseon², Lee, Sangyoub^{3*}

¹Representative Lawyer, Law Firm Taehan Co., Ltd.

²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f litigation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cro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ross analysis result,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many variables which were past legal relati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double lawsuit, abuse of lawsuit right·litigation trust,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no standing to sue·no standing to be sued, lapse of litigation period, no legal interest, no own defect of approval. On the other hand, the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variable.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result,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many variables which were past legal relation, no standing to sue·no standing to be sue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double lawsuit, no own defect of approval, abuse of lawsuit right·litigation trust,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Meanwhile, the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only one variable that was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Overall, it is noteworthy that the offensive cause group showed very low significant results compared with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Keywords :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Litigation, Ruling Factors, Cross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데이터정보처리 기능의 발달로 데이터마이닝과 인공지능의 활용노력이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건설 및 부동산학계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효율성을 제고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서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법적인 다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나 아직 국내에서는 법학의 영역, 특히 건설사업 소송분야의 법원 판결에

대하여 계량적 기법을 활용한 법률문제의 분석이 매우 드문 실정이다. 앞서 서구의 계량법학 선행연구(Negal, 1966; 1985)를 기반으로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재판결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법률문제를 구성하는 변수의 특성에 따른 판결결정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Kim et al., 2019) 이는 계량법학을 구성하는 여러 계량기법 중 상대적으로 초기에 제시된 분석방법으로 이후 개발된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한 연구의 제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부동산공법 관련 소송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도시정비사업¹⁾의 시행주체인 조합의 설립에 대해 조합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해 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행정주체를 피고로 삼아 제기하는

* **Corresponding author:** Lee, Sangyoub, Department of Real Estate Studies,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Korea

E-mail: sangyoub@konkuk.ac.kr

Received September 29, 2019; revised -

accepted November 8, 2019

1)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사업”이라고 약칭함.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결과에 유의미한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 여부의 결정이나 제기된 소송에서 변론 준비에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소송결과의 예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단계 중에서 초기 단계²⁾의 쟁송판결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쟁송이 가장 집중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조합설립 단계에 관한 행정소송의 실제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1심인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만을³⁾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소재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하반기까지의 6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모든 실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법률적 분석으로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유는 소송의 심리과정이나 법리판단의 위계에서 동질적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송의 변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유 및 쟁점을 선정하였다. 이어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 사유가 소각하판결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쟁점이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선행연구 고찰

계량법학은 법학에 대해 계량적 방법을 적용한 학문영역으로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도 포괄하며, 입법, 재판, 법률실무 등에 대한 활용까지 망라하는 학문분야를 일컫는다(Kim, 2018).

이러한 계량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ar et al. (1977)은 1950년부터 1975년까지의

약 26년 동안 코네티컷주(State of Connecticut) 대법원에서 심리된 용도지역변경 청구사건(Zoning Amendment Cases) 총 79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167개의 영향요인을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 11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승소판결의 가능성을 약 95% 수준의 정확도로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통계학에서 예측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회귀분석 방법을 법학적 연구에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im (2011)은 감정평가의 과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총 48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해 감정평가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의 승패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승·패소이며, 독립변수는 감정평가의 목적, 원고의 속성, 피고 감정평가사의 속성 등의 24개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수의 법원판결을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의 계량적 방법에 의해 분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Kim et al. (2015)은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규명하며, PLS (Partial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통해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업기간에는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용역 관련 이익집단의 사업지원 및 방해 등이, 사업비용에는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 매도청구, 이주, 멸실 및 철거 신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각각의 순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Lee (2017)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행정사건의 실제 판결 319건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소요인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소송의 승소여부로 독립변수는 사건의 당사자 특성, 객관적 특성, 행정청의 불허가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목, 민원, 주변환경조화 적정성,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소송의 승소결정요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분석방법에 나아가 교차분석을 통해 각각의 개별 독립변수(소송사유나 쟁점)가 종속변수(소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의 비율구성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어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다수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수들 사이의 영향력이 서로 동시에 작용,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도와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초기 단계는 도시정비사업의 진행단계 중 분쟁이 가장 많은 단계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 단계, 조합설립에 관한 창립총회 및 인가 단계임. 두 단계는 그 앞의 기초단계인 정비기본계획수립 단계, 정비계획수립 단계, 정비구역지정 단계 등의 하자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음.
3) 분석과정의 오류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심인 고등법원 판결과 3심인 대법원 판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4) 통상적으로는 행정사건의 심리는 지방법원의 본원에서 심리하나, 예외적으로는 강원도의 경우 강릉, 속초 등 동부지역의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그 외의 사건은 본원인 춘천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 심리를 담당함.

3. 연구모형

3.1 분석변수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본안전항변 그룹은 독립변수인 피고가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가 종속변수인 소각하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어 본안쟁점 그룹은 독립변수인 원고가 본안 승소를 위해 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본안쟁점사항이 종속변수인 본안승·패소판결(청구인용/청구기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안전항변사유는 총

441건의 판결 전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안쟁점사항은 통계적 유의성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⁵⁾ 본안전항변이 인용된 소각하판결 81건을 제외한 총 360건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각 모형의 독립변수는 통계적 유의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⁶⁾ 10개의 본안전항변사유와 12개의 본안쟁점사항을 각각 선정하였다.

한편, 모든 소송 사건에는 지역, 면적, 사업 유형, 사업단계 유형, 소송청구 유형, 쟁송기간 등의 객관적 특성이 존재하게 되나 이러한 특성변수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변수인 본안전항변사유 또는 본안쟁점사항과 성격이 다르므로 다음 절의 기초통계량에서 별도로 분석하였다.

Table 1. Analysis variables

Division		value	contents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independent variable	no legal interest	0,1 There is no legal interest from lawsuits.
		no standing to sue-no standing to be sued	0,1 There is no standing to sue and be sue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0,1 There is not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past legal relation	0,1 The content of the plaintiff's dispute has no legal interest, because a new change disposition has been made so it is already a legal relationship.
		existence of trailing disposition	0,1 New trailing disposition exists after the disposition of plaintiff's dispute has been made.
		no own defect of approval	0,1 The content of the plaintiff's dispute is not own defect of approval
		lapse of litigation period	0,1 The lawsuit was filed after lapse of litigation period.
		double lawsuit	0,1 The lawsuit was filed in duplicate.
		abuse of lawsuit right / litigation trust	0,1 The plaintiff's lawsuit was filed in abuse of lawsuit right correspond or only litigation act was entrusted.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0,1 The final judgement already exist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plaintiff's dispute.	
dependent variable	whether rejection of lawsuit judgment	0,1 Whether the court has rejection of lawsuit judgment on the defendant's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Offensive cause of action	independent variable	acceptance before zoning designation	0,1 The Administration approved the commission before designating maintenance zones.
		defect on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member, delegate and executive	0,1 Illegal reasons exist in the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member, delegate and executive.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0,1 Illegal reasons exist in designating maintenance zones/ Maintenance zones changed.
		dilapidated requirement safety diagnosis	0,1 Failed to meet dilapidated requirement / Did not go through safety diagnosis.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0,1 There is no articles of association. / Illegal exist in decision procedure or contents of articles of association.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0,1 Promoting committee altered written consent / Promoting committee deceived written consent in request process / There is blank entry or essentials omission or abstractive entry on written consent/ Did not attach association, committee list etc to written consent.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0,1 The defect exist i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0,1 The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is succeed to trailing disposition, so the trailing disposition is illegal.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0,1 There is defect in convene procedure, decision procedure or on-site attendance requirements.
		defect on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and association president	0,1 The union leader is ineligible.
		change contents of project	0,1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of requests for a consent form were changed at the time of the general meeting.
	attachment omission on apply	0,1 The attachment is omitted when applying for association establishment.	
dependent variable	whether winning judgment	0,1 Whether the court has winning judgment on the plaintiff's claim	

5) 다수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일부의 청구는 본안전항변에 의해 소각하되고, 일부의 청구는 본안판단에서 인용된 5건을 제외하여 360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6) 분통계적 유의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김요한 외(2019)의 소송사유 및 쟁점을 참고하여 변수를 선정하였음.

3.2 기초통계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총 441건의 판결 중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건은 115건(26.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사건은 291건(66.0%), 도시환경정비 관련 사건은 35건(7.9%)이다. 총 441건의 판결에 관해 지역, 면적, 행정청의 처분년도, 법원의 판결 선고년도 등의 물리적 특성 요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지의 지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⁷⁾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사건의 수는 225건으로 가장 많고, 강릉지역과 제주지역은 해당 사건이 부존재하였다. 사업지의 면적별로 살펴보면, 가장 넓은 면적 구간으로 160,000㎡ 이상의 사건 수는 51건, 가장 좁은 면적 구간으로 30,000㎡ 미만의 사건 수는 88건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행정청의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 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해진 연도별분석결과, 행정처분은 81건으로 2008년, 법원선고는 198건으로 2010년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⁹⁾ 이어서 처분시기와 선고시기¹⁰⁾ 그리고 제소시기와 선고시기의 사업유형 및 지역별 분석결과, 처분시기부터 1심 판결의 선고기간은 서울(재건축), 의정부(재건축)이 각 5개월로 최단기와 서울(재건축)이 135개월로 최장기였으며, 개월 수의 평균값으로는 의정부(도시환경정비)가 16.5개월과 최단기와 대구(재개발)가 67.5개월로 최장기로 나타났다.¹¹⁾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제소시기로부터 1심 판결의 선고기간은 창원(재개발)과 서울(재건축)이 각 2개월로 최단기와 창원(재개발)이 39개월로 최장기였으며, 개월 수의 평균값으로는 대전(도시환경정비)가 5.5개월과 최단기와 울산(재개발)과 대구(재건축)가 각 15개월로 최장기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사업유형별 및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이외 사업유형, 사업진행단계, 소송청구유형 등의 객관적 특성 구분으로 기초통계량을 분석하였으나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Kim, 2018).

7)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지를 관할하는 법원은 그 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담당 하므로 법원의 관할지역과 사업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8) 88건 중 10,000㎡ 미만의 사건 수는 9건이며 가장 넓은 곳은 626,232㎡으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정비구역임.
 9) 가장 오래된 처분은 2002년에 행해진 것으로서 2002. 11. 4에 의왕시장의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며, 해당 처분에 대한 1심의 판결 선고는 2010. 8. 12에 행해졌음.
 10) 행정청의 처분이 행해진 후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무효를 다투는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의 선고까지의 기간
 11) 행정청의 처분시기로부터 오랜 기간을 경과한 후 1심 판결이 선고된 이유는 미동일자 또는 사업반대자가 조합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뒤늦게 제기한 것이 큰 원인으로 간주됨. 이는 사업진행 속도, 조합임원의 행태, 조합사업 관련 경제적 환경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켜보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함.

4. 분석

4.1 교차분석

4.1.1 판결 전체 분석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소각하판결 여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법하여 소각하된 판결의 건수는 441건 중 81건으로 18.4%, 소각하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은 사건은 441건 중 360건으로 81.6%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Cross-analysis on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variable - N(%)

Variable	division	not be rejection of lawsuit	be rejection of lawsuit	sum	chi-square test (χ ²)	p
no legal interest	no claim	354(82.1)	77(17.9)	431(100.0)	3.194*	0.074
	with claim	6(60.0)	4(40.0)	10(100.0)	3.194*	0.074
no standing to sue	no claim	358(82.1)	78(17.9)	436(100.0)	5.846**	0.016
	with claim	2(40.0)	3(60.0)	5(100.0)	5.846**	0.016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no claim	350(84.3)	65(15.7)	415(100.0)	34.343***	0.000
	with claim	10(38.5)	16(61.5)	26(100.0)	34.343***	0.000
past legal relation	no claim	344(90.8)	35(9.2)	379(100.0)	149.954***	0.000
	with claim	16(25.8)	46(74.2)	62(100.0)	149.954***	0.000
existence of trailing disposition	no claim	357(81.7)	80(18.3)	437(100.0)	0.118	0.731
	with claim	3(75.0)	1(25.0)	4(100.0)	0.118	0.731
no own defect of approval	no claim	340(82.7)	71(17.3)	411(100.0)	4.809*	0.028
	with claim	20(66.7)	10(33.3)	30(100.0)	4.809*	0.028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no claim	347(82.4)	74(17.6)	421(100.0)	3.865**	0.049
	with claim	13(65.0)	7(35.0)	20(100.0)	3.865**	0.049
double lawsuit	no claim	359(82.2)	78(17.8)	437(100.0)	8.635***	0.003
	with claim	1(25.0)	3(75.0)	4(100.0)	8.635***	0.003
abuse of lawsuit right / litigation trust	no claim	358(82.5)	76(17.5)	434(100.0)	13.356***	0.000
	with claim	2(28.6)	5(71.4)	7(100.0)	13.356***	0.000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no claim	358(82.3)	77(17.7)	435(100.0)	9.464***	0.002
	with claim	2(33.3)	4(66.7)	6(100.0)	9.464***	0.002
sum		360(81.6)	81(18.4)	441(100.0)		

* p<.10, ** p<.05, *** p<.01

카이제곱 검정결과 1% 수준에서 매우 높은 유의도를 보인 사유는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기관력존재' 등으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소각하율은 60% 이상 높게 나타났다. 5% 수준에서 유의도를 보인 사유는 '원고과적격없음', '제소 기간도과' 사유이며 이러한 주장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는 소각하율이 높게 나타났다. 10% 수준에서 유의도를 보인 사유는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자아님' 등으로 이들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각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룹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본안승소판결 여

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Table 3>,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한 사건(일부승소 사건 포함)은 전체 판결건수 360건 중 58건으로 16.1%이다.

원고가 본안에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판결건수 총 360건 중 302건으로 83.9%이다. 이는 2016년 우리나라의 전체 행정사건 통계에서 실제 심리가 진행되어 본안판결에 의해 종국처리된 사건 총 12,951건 중 원고가 전부승소나 일부승소한 비율은 약 21.79%(2,823건)에 비해 상당히 낮은 승소율이다¹²⁾.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약 5년 동안 우리나라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1심 행정사건 총 319건 중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인(원고)이 승소한 비율 33.2%(106건)에 비해 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¹³⁾.

한편, 소각되지 않아 본안심리를 받은 사건 중에서 승소한 비율인 16.1%는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여 인용된 소각하판결의 비율인 18.4%보다 낮다. 따라서 도시정비사건에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의 주장은 보다 효율적으로 인용됨을 알 수 있다.

Table 3. Cross-analysis on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variable - N(%)

Variable	division	plaintiff lose	plaintiff win	sum	chi-square test (χ ²)	p
acceptance before zoning designation	no claim	161(84.7)	29(15.3)	190(100.0)	0.214	0.644
	with claim	141(82.9)	29(17.1)	170(100.0)	0.214	0.644
defect on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delegate	no claim	284(83.3)	57(16.7)	341(100.0)	1.746	0.186
	with claim	18(94.7)	1(5.3)	19(100.0)	1.746	0.186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no claim	250(83.9)	48(16.1)	298(100.0)	0.000	0.997
	with claim	52(83.9)	10(16.1)	62(100.0)	0.000	0.997
dilapidated requirement	no claim	277(83.7)	54(16.3)	331(100.0)	0.125	0.723
	with claim	25(86.2)	4(13.8)	29(100.0)	0.125	0.723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no claim	279(84.8)	50(15.2)	329(100.0)	2.359	0.125
	with claim	23(74.2)	8(25.8)	31(100.0)	2.359	0.125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no claim	108(83.7)	21(16.3)	129(100.0)	0.004	0.948
	with claim	194(84.0)	37(16.0)	231(100.0)	0.004	0.948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no claim	102(85.0)	18(15.0)	120(100.0)	0.164	0.685
	with claim	200(83.3)	40(16.7)	240(100.0)	0.164	0.685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no claim	288(84.2)	54(15.8)	342(100.0)	0.524	0.469
	with claim	14(77.8)	4(22.2)	18(100.0)	0.524	0.469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no claim	241(82.8)	50(17.2)	291(100.0)	1.289	0.256
	with claim	61(88.4)	8(11.6)	69(100.0)	1.289	0.256
defect on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no claim	293(83.7)	57(16.3)	350(100.0)	0.284	0.594
	with claim	9(90.0)	1(10.0)	10(100.0)	0.284	0.594
change contents of project	no claim	282(84.4)	52(15.6)	334(100.0)	1.006	0.316
	with claim	20(76.9)	6(23.1)	26(100.0)	1.006	0.316
attachment omission on apply	no claim	295(84.0)	56(16.0)	351(100.0)	0.255	0.614
	with claim	7(77.8)	2(22.2)	9(100.0)	0.255	0.614
sum		302(83.9)	58(16.1)	360(100.0)		

* p<.10, ** p<.05, *** p<.01

이와 별도로, 종속변수가 본안승소판결 여부인 본안쟁점 그룹의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사유는 없다. 소각하에 비해 본안에서 원고의 승소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승소율이 두드러지게 높지 않으며, 승·패소의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1.2 소송특성별 분석결과

소송특성별 분석을 위해 우선 객관적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라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로 표본을 구분하여 주택재개발 여부에 관해 본안전각하 및 본안승패소 여부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5 미만의 표본 셀이 두 개 이상이면 카이제곱 값이 유의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5 미만의 표본 셀이 1개 이하이며 카이제곱 값이 유의한 변수들은 <Table 4>와 같다¹⁴⁾. 분석결과, 본안전항변그룹에 관한 주택재개발 표본에서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소각하의 비율이 높으며, 주택재건축 표본에서는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지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소각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안쟁점그룹에 관한 주택재개발 표본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업내용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승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ross-analysis result by project type

Division	group	project type (whether housing redevelopment)	significant variables
project typ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housing redevelopment	-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 past legal relation
		housing reconstruction	-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 past legal relation - no own defect of approval
	offensive cause of action	housing redevelopment	- change contents of project
		Urban redevelopment	

이어서 본안전항변그룹에 관한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추진위승인쟁송의 표본에서 '과거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소각하의 비율이 높았으며, 조합인가쟁송 표본에서는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지아님', '제소기간도과', '소권남용·소송실탁'을 주장하는 경우

12) 대법원, 『사법연감(통계)』, 2017. : 위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6년의 1심 행정사건에서 원고 전부승의 사건 수는 1,950건, 원고 일부승의 사건 수는 873건, 원고 패의 사건 수는 9,071건, 소각하 사건 수는 1,057건임.

13) 김요한 · 이상엽, 2017, 27쪽.

14) 지면의 제한으로 요약결과만 기재함. 이하의 사업진행단계별, 소송정규유형별 분석결과도 동일함.

에 소각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 그룹에 관해 모든 사업진행단계에서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ross-analysis result by progress stage

Division	group	progress stage of project (whether association approval dispute)	significant variables
progress stage of project		promoting committee acceptance dispute	- past legal relation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 past legal relation - no own defect of approval -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 abuse of lawsuit right/ litigation trust
	offensive cause of action	both of dispute	
		promoting committee acceptance dispute	
		association approval dispute	
	both of dispute		

본안전항변 그룹에 관한 소송청구유형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의 표본에서는 ‘법률상이익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소청구의 표본에서는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양자의 청구 표본에서는 ‘과거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각각 소각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 그룹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의 표본만 유의한 변수가 나타났는데, ‘총회관련하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원고승소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Cross-analysis result by claim type

Division	group	claim type (whether cancellation claim)	significant variables
type of claim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validation claim	- no legal interest -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 past legal relation - no own defect of approval
		cancellation claim	-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offensive cause of action	both of claim	- past legal relation
		confirmation claim	-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cancellation claim	
	both of claim		

4.1.3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필요성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교차분석에서 제1그룹인 본안전항변 그룹에 비해 제2그룹인 본안쟁점 그룹은 유의한 결

과가 없거나 극히 적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본안전항변사유와 달리 본안승소를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의 숫자는 전체 사건의 수에 비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인용률이 매우 낮은 점, 특정한 쟁점이 탁월하게 승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변수들 간에 일부 중첩된 요인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상호 간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카이제곱검정에 기반 교차분석은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비율의 구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관한 분석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동시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 간의 영향력을 보정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교차분석의 결과가 타당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4.2 로지스틱회귀분석

4.2.1 본안전항변 그룹 분석결과

판결전체 총 441건 표본을 대상으로 본안전항변 그룹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Table 7), ‘원·피고적격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가고유하자 아님’, ‘소권남용·소송실탁’, ‘기관력 존재’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전체 표본에서 ‘원·피고적격 없음’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성은 약 22.6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성은 약 11.0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과거법률관계’와 ‘중복제소’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성은 각각 약 46.6배, 약 45.9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인가고유하자 아님’, ‘소권남용·소송실탁’, ‘기관력존재’의 항변사유를 주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성은 각각 대략 3.7배, 11.7배, 14.7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주택재건축 표본을 대상으로 본안전항변 그룹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석결과(Table 8),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의 항변사유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의 항변사유는 유의수준 5%에서, ‘제소기간 도과’의 항변사유는 유의수준 10%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택재건축 표본에서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그리고 ‘제소기간 도과’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

성은 각각 약 76.8배, 15.7배, 19.5배 그리고 7.9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재건축 표본에 이어 주택재개발 표본을 대상으로 본 안전항변그룹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Table 9>,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는

유의수준 1%에서, ‘법률상이익 없음’, ‘소권남용·소송실탁’, ‘기관력 존재’는 유의수준 5%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법률상이익 없음’, ‘소권남용·소송실탁’ 그리고 ‘기관력존재’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

Table 7.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B	S.E.	Wals	DOF	p	Exp(B)	90% confidence interval for EXP(B)	
							loewr	upper
no legal interest	1.148	0.881	1.699	1	0.192	3.151	0.561	17.703
no standing to sue- no standing to be sued	3.117	1.034	9.096	1	0.003	22.587***	2.979	171.273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2.406	0.567	17.985	1	0.000	11.084***	3.647	33.692
past legal relation	3.841	0.392	96.138	1	0.000	46.563***	21.608	100.340
existence of trailing disposition	-0.901	1.317	0.468	1	0.494	0.406	0.031	5.369
no own defect of approval	1.320	0.559	5.588	1	0.018	3.745**	1.253	11.193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1.034	0.712	2.111	1	0.146	2.812	0.697	11.341
double lawsuit	3.826	1.245	9.442	1	0.002	45.887***	3.997	526.756
abuse of lawsuit right / litigation trust	2.459	1.075	5.238	1	0.022	11.697**	1.424	96.100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2.689	1.089	6.099	1	0.014	14.720**	1.742	124.387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 40.795 (p<.001)								

* p<.10, ** p<.05, *** p<.01

Table 8.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in housing reconstruction

	B	S.E.	Wals	DOF	p	Exp(B)	90% confidence interval for EXP(B)	
							loewr	upper
no legal interest	0.261	1.153	0.051	1	0.821	1.299	0.136	12.442
no standing to sue- no standing to be sued						0.000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2.970	1.153	6.636	1	0.010	19.495**	2.035	186.787
past legal relation	4.342	0.873	24.730	1	0.000	76.826***	13.880	425.235
existence of trailing disposition						0.000		
no own defect of approval	2.751	0.851	10.451	1	0.001	15.658***	2.954	82.997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2.062	1.144	3.247	1	0.072	7.859*	0.835	74.013
double lawsuit						∞		
abuse of lawsuit right / litigation trust	1.689	1.900	0.790	1	0.374	5.415	0.131	224.458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 5.016 (p=.286)								

* p<.10, ** p<.05, *** p<.01

Table 9.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in housing redevelopment

	B	S.E.	Wals	DOF	p	Exp(B)	90% confidence interval for EXP(B)	
							loewr	upper
no legal interest	2.685	1.253	4.593	1	0.032	14.663**	1.258	170.945
no standing to sue- no standing to be sued						∞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3.456	0.742	21.675	1	0.000	31.683***	7.396	135.720
past legal relation	4.057	0.527	59.378	1	0.000	57.828***	20.603	162.308
existence of trailing disposition	-0.452	1.452	0.097	1	0.756	0.637	0.037	10.962
no own defect of approval	-0.379	0.899	0.178	1	0.673	0.684	0.117	3.990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0.538	1.270	0.179	1	0.672	1.712	0.142	20.655
double lawsuit	4.043	1.279	9.999	1	0.002	56.993***	4.651	698.446
abuse of lawsuit right / litigation trust	3.409	1.420	5.761	1	0.016	30.223**	1.869	488.832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2.778	1.187	5.474	1	0.019	16.091**	1.570	164.958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 8.309 (p=.016)								

* p<.10, ** p<.05, *** p<.01

각하판결의 가능성은 약 31.7배, 57.8배, 57배, 14.7배, 30.2배 그리고 16.1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2.2 본안쟁점그룹 분석결과

판결전체 총 360건 표본을 대상으로 본안쟁점그룹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Table 10>, '정관 관련 하자'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전체 표본에서 '정관 관련 하자'의 쟁점을 주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약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주택재건축 표본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11>, 역시 '정관 관련 하자'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주장한 경우 원고승소가능성은 약 17.9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반면 주택재개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12>, '사업내용변경'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쟁점을 주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약 3.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안전항변 그룹에 비해 본안 쟁점 그룹의 유의성이 매우 낮은 이유는 실제 소송에서 흑백이 명백한 본안전항변사유와 달리, 본안쟁점사항은 법리상 또는 사실관계의 판정상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차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사유가 두드러지게 본안의 승소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은 철저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법리의 검토에 터 잡지 않은 채 법정예 투망식으로 현출되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Table 10.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B	S.E.	Wals	DOF	p	Exp(B)	90% confidence interval for EXP(B)	
							loewr	upper
acceptance before zoning designation	0.212	0.301	0.496	1	0.481	1.236	0.685	2.231
defect on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delegate	-1.497	1.075	1.939	1	0.164	0.224	0.027	1.840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0.004	0.421	0.000	1	0.992	1.004	0.440	2.294
dilapidated requirement safety diagnosis	-0.111	0.622	0.032	1	0.858	0.895	0.265	3.026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0.991	0.478	4.306	1	0.038	2.694**	1.057	6.871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0.111	0.331	0.113	1	0.737	0.895	0.468	1.712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0.274	0.339	0.653	1	0.419	1.315	0.676	2.558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0.354	0.608	0.339	1	0.561	1.424	0.433	4.690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0.724	0.445	2.649	1	0.104	0.485	0.203	1.159
defect on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and association president	-0.376	1.149	0.107	1	0.743	0.687	0.072	6.529
change contents of project	0.726	0.515	1.988	1	0.159	2.067	0.753	5.668
attachment omission on apply	0.894	0.876	1.041	1	0.308	2.445	0.439	13.614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 1.959 (p=.962)								

* p<.10, ** p<.05, *** p<.01

Table 11.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in housing reconstruction

	B	S.E.	Wals	DOF	p	Exp(B)	90% confidence interval for EXP(B)	
							loewr	upper
acceptance before zoning designation	-0.434	0.700	0.385	1	0.535	0.648	0.164	2.553
defect on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delegate						0.000		.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0.271	0.910	0.089	1	0.766	0.762	0.128	4.538
dilapidated requirement safety diagnosis	0.097	1.237	0.006	1	0.938	1.102	0.098	12.450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2.884	1.326	4.732	1	0.030	17.893**	1.331	240.635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0.578	0.646	0.801	1	0.371	0.561	0.158	1.989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0.120	0.655	0.034	1	0.854	1.128	0.313	4.068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0.208	1.391	0.022	1	0.881	0.812	0.053	12.407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0.716	0.875	0.671	1	0.413	0.489	0.088	2.712
defect on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and association president						0.000		.
change contents of project	-0.446	1.142	0.152	1	0.696	0.640	0.068	6.010
attachment omission on apply	1.112	1.701	0.428	1	0.513	3.042	0.108	85.347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 0.662 (p=.1000)								

* p<.10, ** p<.05, *** p<.01

Table 12.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in housing redevelopment

	B	S.E.	Wals	DOF	p	Exp(B)	90% confidence interval for EXP(B)	
							loewr	upper
acceptance before zoning designation	0.495	0.374	1.752	1	0.186	1.640	0.788	3.414
defect on composition of promoting committee, delegate	-1.484	1.152	1.658	1	0.198	0.227	0.024	2.170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0.165	0.504	0.107	1	0.743	1.179	0.439	3.169
dilapidated requirement safety diagnosis	0.163	0.793	0.042	1	0.837	1.177	0.249	5.566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0.386	0.592	0.425	1	0.514	1.471	0.461	4.697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0.293	0.450	0.424	1	0.515	1.341	0.555	3.241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0.442	0.430	1.058	1	0.304	1.556	0.670	3.613
preceding disposition defect succession	0.578	0.771	0.562	1	0.453	1.783	0.393	8.087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0.624	0.569	1.202	1	0.273	0.536	0.176	1.634
defect on qualification of representative and association president	0.227	1.167	0.038	1	0.846	1.255	0.127	12.372
change contents of project	1.270	0.645	3.873	1	0.049	3.562**	1.005	12.619
attachment omission on apply	0.912	1.231	0.549	1	0.459	2.491	0.223	27.826

Hosmer & Lemeshow test: chi-square 2.527(p=.925)

* p<.10, ** p<.05, *** p<.01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의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입된 도시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계량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소송에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을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안전항변사유그룹 및 본안쟁점그룹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에 기반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분석인 교차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결전체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실탁’, ‘기관력 존재’, ‘원·피고적격 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의 없음’, ‘인가고유하자 아님’ 사유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결전체 표본에서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교차분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사유는 없었다. 둘째, 객관적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른 주택재개발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사업내용변경’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건축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객관적 특성인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추진위승인쟁송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과거법률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조합인가쟁송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 ‘제소기간 도과’, ‘소권남용·소송실탁’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모든 사업진행단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객관적 특성인 소송청구유형에 따른 무효확인청구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법률상이의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총회관련하자’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취소청구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양자를 청구하는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과거법률관계’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취소 또는 양자를 청구하는 표본에서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변수는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에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은 유의한 결과가 없거나 극히 적게 나타났다.

이어서 두 번째 분석인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결전체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인가고유하자 아님’, ‘소권남용·소송실탁’, ‘기관력 존재’가 유의하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정관관련하자’ 쟁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른 주택재건축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정관관련하자’ 쟁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객관적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른 주택재개발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

거법률관계, '중복제소', '법률상이익 없음', '소권남용·소송신탁', '기관력 존재'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사업내용변경'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본안전향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유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 여부의 결정이나 제기된 소송에서 변론준비에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소송결과의 예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실무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대효과를 가진다.

반면 본 연구는 소송사건의 종료 후 해당 사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닌 당사자가 재판심리 과정에서 제출하는 주장내용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로는 다양한 계량분석기법과 더욱 고도화된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적용을 통한 분석으로 보다 정교하게 영향관계를 정의할 수 있고 예측능력을 가지는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18년도 박사학위논문을 기반으로 편집·정리하여 작성되었음

References

Haar, Charles M., John P. Sawyer, Jr., Stephen J. Cummings (1977). "Computer Power and Legal Reasoning : A Case Study of Judicial Decision Prediction in Zoning Amendment Cases."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American Bar Foundation*, 2(3), pp. 651-768.

Kim, C., and Kim, H., and Lee, J. (2015). "A Study on the Conflict Resolution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Urban Rehabilit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16(4), pp. 2495-2504.

Kim, D. (2011). "A study on civil law suit over appraisal." M.D thesis, Konkuk Univeristy, Seoul, Korea.

Kim, Y., and Lee, S. (2017). "A Study on the Priorities of Winning Determinants of Real Estate Development Permit Lawsuit Case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KRERI*, 27(2), pp. 19-34.

Kim, Y. (2018). "A Jurimetrics Analysis on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h.D. thesis, Konkuk Univeristy, Seoul, Korea.

Kim, Y., Jung, B., and Lee, S. (2019).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0)5, pp. 104-114.

Nagel, Stuart S. (1966). "Judicial Prediction and Analysis From Empirical Probability Tables." *Indiana Law Journal*, 41(3), Indiana Law School, pp. 403-419.

Nagel, Stuart S. (1985). "Case Prediction by Staircase Tables and Percentaging." *Jurimetrics*, 25(2), American Bar Association, pp. 168-195.

요약 :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안전향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기관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향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인가고유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관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정관관련하지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향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도시정비사업, 소송, 판결요인, 교차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